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655/전송(02)790-8911
백신접종지원팀 팀장 백영기 [6655]/ 팀원 문성현 [6655]/E-mail:kma7942474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171-857호

시행일자 2021. 4. 26.

수 신 각 시도지사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료비용 청구 및 진료확인서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

가. 보건복지부, 보험급여과-2141(2021.4.21.)

나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2387(2021.3.26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 및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진료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온바,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, 이미 발생한 질병·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임.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·약제·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함
- 다만,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(시행비)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, 백신 접종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
- 접종일 이후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·약제·치료재료를 급여대상으로 산정 가능함
- ‘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피해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, 진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‘진료확인서’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붙임 예시를 참고하여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

※ 붙임 공문 참조

붙임 : 관련 공문, 진료확인서 예시, 포스터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